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37 | 2024.05.27 (2024.05.20~05.2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5.20~05.26)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 추진을 발표하고, 6월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18.1조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년부터 신속 가동 ②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신속한 조성을 위해 인프라 지원 강화 ③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세부 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바, ①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등 개정,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실시 ② 건설업계로부터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 건의가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EU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지원을 밝히며, ① 수출 규모, 업종 등 고려한 전략적 지원 ②설비전환,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③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등 관련 법·제도 마련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TT 플랫폼과 달리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공급은 진입 규제가 존재함에 따라 라디오방송 혹은 데이터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전국에서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OTT의 성장, 1인 매체 확산 등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다중 매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경로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하기 위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반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법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주요 사업부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한 이후에도 채권자로서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교부받는 등의 체계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식매매대금에 대해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보호 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공개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관련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

<환경부>는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고용노동부>는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공장 출고 이후부터 인도 이전까지 발생한 자동차 하자수리이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 및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제작사 등 또는 부품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 제고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감경규정을 신설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자 추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시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출연금을 감액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구조도에서 배분되는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규제체계와 동일하게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운영허가 체계로 통일시킴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3인)」** ,

법원행정처를 대법관인 처장 이외에는 사법행정을 주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재판지연 해소와 재판독립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제21대 국회 임기종료(5/29)를 앞두고 **5/28(화)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각 상임위에서 의결·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5/27 현재 여야간 확정된 의사일정은 없음을 참고바랍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마련(관계부처 합동) 8
-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관계부처 합동) 9
- EU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지원(중소벤처기업부)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 1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3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3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3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14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18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20
-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부) 21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21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 22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 23
-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 24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환경부) 25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환경부) 25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6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27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28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2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9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9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9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0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1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1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국토교통부)	32
•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국토교통부)	33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해양수산부)	35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	36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양수산부)	37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37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38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39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식품의약품안전처)	39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4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4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41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4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43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자력안전위원회)	4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3인)	46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46
•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양경규의원 등 10인)	4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5.20~05.26) [바로가기](#)

- [자본시장/증권/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에서 ‘부당이득액’에 대한 인과 관계를 다투어 부당이득액 관련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거래의 몰수 및 추징을 막을 수 있었던 사안
- [ESG] EU 에코디자인 규정 유럽의회 통과 - 에코디자인 요구조건 강화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마련

2024-05-23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의 논의 결과 및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설명하면서 제조시설, 팹리스, 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 추진을 발표**하고, **6월중 확정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18.1조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년부터 신속 가동**
 -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17조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반도체 투자 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
 - 현재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1조원으로 확대
- ②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신속한 조성을 위해 인프라 지원 강화**
 -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
 -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
- ③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 R&D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도 단축
 - R&D와 인력양성 등에 대해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으로 확대
 -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하여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

< 반도체 관련 지원 내용 >

(단위: 조원)

	'25년 이후 총사업비	비 고
합 계	26조원 수준	
① 금융·펀드	18.1+α	· 반도체 저리Loan 17조원 + 반도체생태계펀드 1.1조원+α
② 인프라	2.5+α	· 도로/용수/전력 지원 등
③ R&D, 인력양성 등 재정지원	5조원 이상	· 직전 3년('22~'24) 3조원 → 향후 3년('25~'27) 5조원 이상 * 신규 대규모 R&D 포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관계부처 합동
(금융위, 금감원 등)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2024-05-2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세부 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기준·내규 등 개정, 7월초까지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실시

- 대주단 협약 개정, 신디케이트론 조성, 한시적 규제완화, 캠프 자금지원시 우선매수권 부여 등 주요 추진 과제는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 등 제도개선 완료, 시행 예정
-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5.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
- * 업권별 협회(은행, 생보, 손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생보 2개사(삼성·한화), 손보 3개사(메리츠·삼성·DB)
- 금년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
- 캠프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투자계약서 개정, ~'24.5월)과 취득세 한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24년말)도 차질없이 추진중
-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

② 건설업계로부터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정책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건의 수렴

-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EU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지원

- 수출 규모, 업종 등 고려한 전략적 지원
- 설비전환, 융자·보증 등 탄소 감축 대응력 강화
- 법·제도 마련 등 탄소중립 기반 조성

2024-05-22

중소벤처기업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부에서 마련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원방안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 및 유관 협·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5년까지 약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하여, EU 수출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출 규모, 업종, 정규수출 여부 등 고려한 전략적 지원

- 수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23년 기준 1억원 이상 355개사 / 중소기업 EU 수출액의 98.3%)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시설(인프라)구축, 탄소중립 경영혁신 상품권(바우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3년 기준 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전담조직(TF) 합동 설명회와 고객지원센터(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

②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 등 대응력 강화

-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
-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

③ 탄소규제 정보제공 및 법·제도 등 자발적 탄소중립 지원

-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 온라인거래터(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 추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5-20 시행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신청자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에게도 통보하여 개선사항의 이행을 유도하며, 이송취급소의 지상에 설치하는 배관에 대한 보호설비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차량 등의 충돌에 따른 배관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반도체 및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및 이차전지의 제조를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의 설비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조제1항제1호, 제6조제7호, 제18조제6항, 제19조제1항, 제46조, 제57조제5항 등)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5-21 시행
-------	---	---------------

옥외광고물의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확대하고, 대학 및 그 부속시설에 광고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연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반영 대상 금액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 확대 (제2조제1항제1호다목, 제4조제1항제8호 단서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 중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확대하여 모노레일 등의 역사(驛舍)에서도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도록 함
- ②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규제 완화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차 및 음식판매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에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전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량 1량의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부분을 제외한 차량의 옆면 전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자기 소유 자동차 및 덤프트럭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 전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③ 대학 내 광고물의 표시 금지 폐지 (제24조제1항제1호자목)

- 종전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경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였으나,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는 그 제한을 폐지하여 광고물 등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함

④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관리 체계 마련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에 따른 자유표시구역 운영 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운영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옥외광고사업자,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⑤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시기 등 규정 (제36조, 제37조제2항제2호의2·제3호의2 신설)

-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안전점검의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또는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⑥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관리 강화 (별표 2 제2호나목)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 및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 등을 다음 연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반영하도록 함

⑦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기준 완화 (별표 3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 중 평면형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길이를 가로 18m, 세로 8m 이내로, 총 광고면적을 288㎡ 이내로, 홍보탑의 경우 길이를 가로 10m, 세로 5m 이내로, 총 광고면적을 100㎡ 이내로 제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길이 제한을 각각 폐지하고 해당 면적 이내로만 제한하도록 함
-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 또는 높이의 제한을 완화하여 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도로에 자유로 및 강변북로를 추가함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5-21 시행

종전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모두 붙이고 운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붙이고 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5. 21. 시행)됨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임시운행허가증의 부착 방식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26조제4항, 별지 제17호서식)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5-22 시행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사유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결위된 경우에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입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민운동시설 및 주민휴게시설을 추가하며,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판정서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고 그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할 때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제12조제2항, 제18조의3, 제22조의2 신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5-20 시행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자 등에 대한 위생용품의 회수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위생용품의 회수 등에 필요한 위해성 등급을 보건위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까지로 구분하고,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회수계획에 회수방법, 회수기간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회수 종료 후 회수실적, 사후처리 계획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생용품수입업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방식의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20조의2 신설, 제21조의2 신설, 제22조의2 신설, 별표 1 제3호가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4-07-21 시행예정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장애인의 의약품·의약외품 오용(誤用)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그 제품명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8307호, 2021. 7. 20. 공포, 2024. 7. 21. 시행)됨

이에 따라, 의약품 등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서류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는 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냉장 또는 냉동보관이 필요한 의약품 중 사용 시 실온의 범위에서 보관할 수 있는 의약품을 운송하는 경우에 대한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방법 및 기준(제71조의2 및 제75조의2 신설)

- 점자는 「점자법」에 따른 점자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인식하는 경우 음성·수어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테두리를 양각 또는 촉각 돌기를 사용하여 표시하도록 함

②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제75조의3 신설)

- 실태조사 및 평가에는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현황에 관한 사항 및 시각·청각장애인이 해당 표시를 통해 의약품 등의 정보를 적절히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서면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실태조사 및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태조사 및 평가에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③ 냉장 또는 냉동보관이 필요한 의약품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 완화(별표 6)

- 냉장 또는 냉동보관이 필요한 의약품 중 사용 시 실온의 범위에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자동온도기록장치 등을 대신하여 수송용기 등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온도표시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5-21 시행

(다만, 제1조의2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예정)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자금유통 가능성이 있는 가상자산거래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에 추가하고,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자금조달방법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 범위 확대 (제1조의2제2항제8호 신설)

- 카지노 또는 경륜·경정이나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금전의 지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함

② 신용카드회원 모집 규제 합리화 (제6조의7제5항제1호)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면서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스스로 신용카드회원이 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경우에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분의 100'으로 하여 모집 방법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함

③ 무기명식 선불카드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상향 조정 (제7조의2제1항제2호)

-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④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방법 확대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뿐만 아니라 '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1. ~05.31.

OTT 플랫폼과 달리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공급은 진입 규제가 존재함에 따라 라디오방송 혹은 데이터방송을 하려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전국에서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방송경로사용사업 등록제 개선 (안 제2조제3호·제9조제5항 등)
 - 실시간 텔레전망방송을 하려는 방송경로사용사업에 한하여 현행 등록제를 유지하고, 그 밖의 라디오방송 경로사용사업 등에는 신고로 진입규제를 완화
- ②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개선 (안 제78조제4항)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역외 재송신 승인제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라디오방송 등에 대한 재송신 승인제를 폐지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전화: 044-202-6541, 팩스: 044-202-60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1. ~05.31.
-----------	-------------------------	------------------------

OTT의 성장, 1인 매체 확산 등 유료방송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다중 매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경로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터넷 다중 매체 방송 제공사업자와 방송경로사용사업자 간 겸영 제한 폐지 (안 제8조제4항)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 (전화: 044-202-6541, 팩스: 044-202-6039)

디지털 기반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반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안 제22조의11 제1항, 제2항)
 -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단체가 자율규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효율적인 자율규제 수행을 위해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 ②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안 제22조의11 제3항, 제4항)
 - 정부가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③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안 제22조의11 제5항)
 -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연 1회 이상)하도록 규정
- ④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안 제22조의11 제6항)
 - 정부가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⑤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 감경 (안 제22조의11 제7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 시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http://www.kict.go.kr) (전화: 044-202-6635, 팩스: 044-202-6041)

「소프트웨어 진흥법」일부개정(법률 제 20061호, 2024.1.23. 공포, 2024.7.24. 시행)에 따라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추진 절차, 지식재산권 귀속의 예외사유, 총한도액 국회 의결을 위한 총한도액등의 사용명세서 및 정부지급금추계서 제출의 세부 절차,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격성 조사 등의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사항 중 개발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부문의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임대형, 수익형, 구매형, 혼합형 등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32조)
- ②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신설 (안 제32조의2)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 절차에 관한 기존 규정을 구체화하고 조문의 위치를 변경 (제33조 삭제, 안 제43조의2 신설)
- ④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인정심의위의 역할 등을 규정 (안 제43조)
- ⑤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정부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총한도액등의 사용명세, 정부지급금추계서 제출 세부절차를 규정 (안 제43조의3, 안 제43조의4)
- ⑥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적격성 조사 등 지원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6조의2)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tel:044-202-6337) (전화: 044-202-6337, 팩스: 044-202-6034)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1.
~05.31.

주주총회 소집, 결의, 진행을 포괄하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하여 상법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권 보장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출석 저조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주요 사업부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한 이후에도 채권자로서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주주로서 배당금도 교부받는 등의 체계상 문제점을 해소하고, 주식매매대금에 대해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주주보호 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양도제한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소수주주 주식 매수도청구 관련 규정 정비 및 공탁제도 도입 (안 제335조의5, 제335조의6, 제360조의24 및 제360조의25)
 - 주주가 주장하는 가액 중 일부 또는 지배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하는 매매가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회사 또는 지배주주의 공탁을 허용함으로써 공탁한 범위에서 회사의 지연손해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함
 - 지배주주가 매도청구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시 통지하는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자료를 본점에 비치하게 하고, 소수주주에게 동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청구권 부여함

- ②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 외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함 (안 제363조 제1항)
- ③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4조의2 등)
- ④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정비 (안 제368조)
 -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을 서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 ⑤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관련 규정 정비 (안 제368조의3, 제368조의4)
 -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 요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서면투표 제도 도입 요건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규정함
 -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사전투표임을 명확히 규정함
- ⑥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규정 신설 (안 제368조의5)
 -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통한 주주총회 운영 및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전자통신의 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인하여 결의방법에 흠이 생긴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제기를 허용하도록 규정함
- ⑦ 전자주주총회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신설 (안 제368조의6 등)
 -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주주가 어느 한쪽의 주주총회에만 출석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함
 -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규정함
- ⑧ 기업 구조변경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정비 (안 제37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등)
 -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반대주주가 채권자 지위만을 보유하게 됨을 명시함
 - 회사가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지 반대주주에 명시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 명시가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여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함
 - 구조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명시가액 및 그 산정근거를 제공하게 하고, 주주에게 동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청구권을 부여함
- ⑨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안 제530조의12 제2항)
 - 상법상 물적분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도입함

※ 문의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 (전화: 02-2110-3256, 팩스: 02-2110-0331)

현행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형태를 면허사업체제로 일원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체육행사 등에 한정된 한정면허 제도를 도입하며, 유·도선안전관리자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도선 현대화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유·도선 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선사업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1호)**

-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고기잡이 및 관광 등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유선사업의 범위에 체험, 축제 및 기념행사 등을 추가하여 유선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②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으로 일원화 (안 제3조제1항)**

- 현행 유선 및 도선사업의 체계를 선박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상의 차이만 있을 뿐 유선·도선의 선령 기준 및 유선·도선사업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면허사업과 신고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효성이 크지 아니하므로, 유선 및 도선사업의 안전 및 편의시설 확보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사업 체계를 면허사업 체제로 일원화함

③ **박람회 등을 위한 유선사업에 대하여 한정면허 도입 (안 제3조제2항)**

- 시·도지사 등 관할관청은 단기간 개최되는 박람회 등의 행사와 관련하여 유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유선사업 면허를 할 수 있음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 (안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제4항 및 제21조의2 신설)**

-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함
-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선 및 도선사업자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알려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⑤ **유·도선 현대화계획 수립 (안 제30조의3 신설)**

- 유선 및 도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⑥ **유·도선 고객만족도평가 도입 (안 제30조의4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선 및 도선사업 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유선 및 도선의 시설 및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http://www.mha.go.kr) (전화: 044-205-4267 팩스: 044-205-8092)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1.
~05.31.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신규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사전심사 (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②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모집 (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③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안 제36조의2제5항 신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승강기정책과](#) (전화: 044-205-4291 팩스: 044-205-8910)

문화체육관광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20.
~07.0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애니메이션업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 (안 제1조의2)
- ② 임금체불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배제 기간을 1년으로 규정 (안 제12조의2)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전화: 044-203-2437, 팩스: 044-203-3464)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시·도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2조, 제3조)

- 기본계획은 5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규정

②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안 제4조)

-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 등 기반 조성, 인력 양성, 교육·홍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관련 기자재(농업용 드론, 농업용 로봇 포함)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 등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로 규정

③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안 제5조, 별표1)

- 조직·시설·인력 등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기준 규정

④ 스마트농업전문기업의 지정 (안 제6조)

-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스마트농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⑤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안 제7조)

- 스마트농업의 유형별 현황(축산은 축종·분야별 현황), 관련 산업 현황, 스마트농업 도입 전·후 변화 등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 규정

⑥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안 제8조)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이외에 스마트농업 관리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규정

⑦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 제9조)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활용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⑧ 표준화 사업의 내용 (안 제10조)

-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 요소 발굴 및 표준 제·개정, 표준 적용을 위한 설계와 제품 개선 및 실증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⑨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 처리 등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규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에 구축·연계된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 운영 주체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⑩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해제 사유 등 (안 제14조)

-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

⑪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안 제15조)

- 부지 면적,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⑫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해제의 고시,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안 제16조, 제17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고, 지구조성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총사업면적 또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전화: 044-201-2421, 팩스: 044-868-0290\)](tel:044-201-2421)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2024.05.20.
~07.01.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안 제2조)

-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②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안 제3조)

- 지도 및 교수요원 기준 인원,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교육과정 등 교육기관 지정 요건 규정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③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안 제4조)

- 스마트농업의 개념,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 기술 등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규정

④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시험과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자격증의 발급, 자격취소 등의 세부기준 등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원예분야와 축산분야로 구분하여 제1차시험(선택형)과 제2차시험(논술형과 약술형 혼합)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규정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
-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전화: 044-201-2421, 팩스: 044-868-029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24.05.21.
~05.31.

축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바,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공개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관련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②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 (안 제8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적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③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 (안 제10조)**

- 종전의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기존의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외에 축산물 유통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사업 및 상담·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유통 관련 공공기관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함

④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안 제13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⑤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 (안 제14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개수·보수 및 현대화, 직거래·온라인거래 등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⑥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공개 (안 제15조)

-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축산물 거래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고받은 그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 있음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mailto:농림축산식품부_축산유통팀) (전화: 044-201-2372, 팩스: 044-868-3966)

환경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4.05.22.
~07.01.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3.10.24. 제정· 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물순환 시설 (안 제2조)

- 법에서 규정한 물 재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수도·하수도, 수자원시설,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유출 지하수 이용시설 등 시설 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시설을 추가 규정

②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안 제3조~5조)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을 위한 전략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공고 방법 등을 규정함

③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 고시 등 (안 제6조~제11조)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고시방법, 의견청취, 지정·변경 제안 절차 등 규정

④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관련 사항 (안 제12조~제15조, 제18조)

-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 포함하는 사항과 고시방법 등의 절차 규정

⑤ 실태조사 (안 제17조)

- 환경부장관이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및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 절차, 방법 등을 규정

⑥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 (안 제20조)

- 사업시행자가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

※ 문의처 :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전화: 044-201-7146, 팩스: 044-201-7130\)](tel:044-201-7146)

환경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2024.05.22.
~07.01.

최근 기후변화 심화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 증가로 전례 없는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물순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을 촉진하고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3.10.24. 제정·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변경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 규정 (안 제3조)
- ③ 물순환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출하는 신청서에 대한 서식을 규정 (안 제4조)
- ④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 제출 서류 양식 및 환경부장관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검토기관을 규정 (안 제5조)
- ⑤ 환경부장관이 물순환 시설 품질인증 시 사용되는 제품·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대상, 범위, 신청서류, 수수료, 품질인증 절차, 품질인증 표시 방법, 품질인증의 취소 등을 규정 (안 제6~11조)
- ⑥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체화 및 신청서·지정서 양식을 규정한 내용 (안 제12조)

※ 문의처 :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전화: 044-201-7146, 팩스: 044-201-7130\)](tel:044-201-7146)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22.
~07.01.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인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2호, 2024. 2. 6. 일부개정, 2025. 8. 7. 시행)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조항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개정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10조의3, 안 제13조)
- ②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였던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관련 업무와 법 제19조의3 신설에 따른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안 제31조제2항·제5항)
- ③ 법 제42조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의 조치와 관련한 권한·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안 제31조제1항·제2항·제5항)
- ④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했던 법 제42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 (안 제31조제4항·제5항·제6항)

※ 문의처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tel:044-201-6787) (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1.
~05.31.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안 제46조의2 신설, 제49조제2항, 안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함
- ②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안 제49조제2항)
 -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tel:044-202-7357) (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1.
~05.31.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가 부담 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함

또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 중 최초 2일분에 대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급여지원 신설 (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호)
-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로 하여 지급기간을 확대함 (안 제76조제1항제2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전화: 044-202-7476, 팩스: 044-202-8054\)](tel:044-202-7476)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24.05.20.
~07.01.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방화문 용어의 정리 (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등)
 -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60+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 ② 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완화 (안 제18조의2)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 ③ 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 (안 제24조제12항)
 - '방화유리창' 용어가 창틀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방화유리창호'로 변경하고, 시험 시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변경하여 명확화 함
- ④ 별표 및 별지의 용어 정리
 -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외벽단열재'를 '외벽 복합 마감재료'로 수정하고자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8, 팩스: 044-201-5576\)](tel:044-201-4988)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23.
~06.13.

건설회사 또는 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 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토록 하고,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주요 자재·부재에 대한 자재공급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정보망에 입력하는 자료와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자재·부재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건설현장 품질관리 관련 자료의 정보망 입력 (안 제91조)
- ② 건설자재·부재의 자재공급원 승인 대상 구체화 (안 제95조)
- ③ 건설현장 점검, 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위탁 (안 제117조)
 -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의 접수, 확인, 관리, 품질검사 결과,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 관리에 관한 위탁사항 추가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044-201-3579, 팩스: 044-201-5553)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22.
~07.01.

품질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 성적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직접 실시하여 작성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9967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관련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등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검사 대장에 작성하고, 이를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명시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의 일부 조항이 변경되어 수정 반영 (안 제50조, 제52조, 제56조)
- ②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상 시험실 규모를 현장여건 등에 맞추어 조정(면적 20㎡ → 18㎡) (안 별표 5)
 - 건설·인프라 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한 사항 반영
- ③ 건설회사에서 품질관련 자료를 내실있게 작성·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양식 개선 (안 별지 42, 별지 48, 별지 49)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전화: 044-201-3579, 팩스: 044-201-5553)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22.
~07.01.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하고,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공장 출고 이후부터 인도 이전까지 발생한 자동차 하자수리이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 및 구매자에게 고지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차제작사 등 또는 부품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 제고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감경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결함조사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을 추정하는 대상 확대 (안 제8조의3)
 -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
- ② 과징금 추가 감경규정 신설 (안 별표 1의3)
 -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안전제고를 위한 자동차제작자 등 또는 부품제작자 등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추가로 감경
- ③ 하자수리이력정보 고지 및 관리 의무 강화 (안 별표 2)
 - 공장 출고 이후부터 인도 이전까지 발생한 하자수리이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거나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신설 및 강화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43, 팩스: 044-201-4999)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5.22.
~07.01.

무등록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차 수집·알선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폐차질서 확립을 위해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

이에 따라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를 위한 폐차사원증의 규격 및 관리방식과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안 제123조의2)

- 매매사원증 발급(신규·재발급) 전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

② 폐차사원증의 관리 등 (안 제143조의2)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종사원 채용 시 폐차사원증을 발급받아 영업기간 중 달도록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에서 사원증 관리 등 기준 마련

③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안 제143조의3)

- 폐차종사원 신규 채용 또는 사원증 재발급 시 받아야 하는 교육 기준 마련

④ 관련 서식 등 마련 (안 별표 28의2)

- 자동차폐차사원증 규격 마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보험과](http://www.koroad.or.kr) (전화: 044-201-3856, 팩스: 044-201-5587)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23.
~06.13.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폐합하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비상설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성·운영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화 (안 제6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운행제한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유료도로 통행 자동차의 통행 정보 및 화상 정보” 등을 규정함

②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14까지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제척·기피·회피·해촉,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관련 사항 전반을 규정함

③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비상설화 (안 제33조의12제5항)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행보험과](http://www.koroad.or.kr) (전화: 044-201-3856, 팩스: 044-201-5587)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5.24.
~07.03.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복 청구 등으로 인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조정 및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를 확인·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정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여부 확인 등 (안 제6조의4, 제6조의5)

- 자동차보험진료수를 조정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적합 여부 확인, 정산결과 통보,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 신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http://www.motw.go.kr) (전화: 044-201-3856, 팩스: 044-201-5587)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4.05.24.
~07.0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운영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ICAO가 산출한 전 세계 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배출 증가율 등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도록 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이에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감축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36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2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체계적인 상쇄·감축을 위하여 2026년도를 개시연도로 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

② 검증기관 지정·취소 등 (안 제3조, 별표 1)

-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기관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환경부장관의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

③ 검증기관의 업무기준 (안 제4조, 별표 2)

-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이행에 관한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검증기관이 준수해야할 업무기준을 규정

④ 검증기관의 검증업무 수행결과 제출 및 평가 (안 제5조)

- 검증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평가받도록 규정

⑤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제출 (안 제6조, 별표 3, 별표 4)

- 이행의무자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배출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작성 기준을 설정
- 제출된 배출량보고서 및 배출량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탄소 배출량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보고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출 기한을 규정

⑥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 이행 특례 (안 제7조, 별표 5)

- 3년 단위의 이행기간 동안 상쇄의무량의 합이 3천톤 미만이거나 항공기운영자가 이행의무자로 지정된 첫 해를 포함하여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상쇄의무를 면제

⑦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작성·제출 (안 제8조, 별표 4, 별표 6)

-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 기한을 규정하고 상쇄의무이행보고서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작성 기준을 설정
- 제출된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작성된 보고서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출 기한을 규정

⑧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안 제9조)

- 환경부장관의 검증기관 지정 권한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의 일부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⑨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 제10조, 별표 7)

- 배출량보고서·상쇄의무이행보고서·검증보고서의 기한 내 미제출 또는 탄소 배출 관련 자료 미보관 등 위반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 설정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전화: 044-201-4368, 팩스: 044-201-5630\)](mailto:044-201-4368)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2024.05.24.
~07.0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운영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ICAO가 산출한 전 세계 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배출 증가율 등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도록 하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이에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감축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36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탄소배출의 적용 특례 (안 제2조)

- 인도주의, 의료·소방 목적 및 이와 관련한 이동 목적의 국제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 규정함

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내용 (안 제3조)

- 체계적인 국제항공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③ 이행의무자 지정·고시 (안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운영자에게 탄소 배출량 자료를 요청하여 연간 탄소 배출량이 1만톤 이상이거나, 자발적으로 이행의무자로 신청한 항공기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출하도록 함

④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 (안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된 항공기운영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받도록 함

⑤ 이행의무자의 지정·취소 (안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 운항증명 효력 정지 등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또는 이행의무자의 자발적 지정 취소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상쇄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적합할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함

⑥ 탄소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제출기한 (안 제7조)

- 보고서를 해당연도의 다음 해의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⑦ 상쇄의무량의 산정·통보 (안 제8조, 별표 1)

- 이행의무자에 대한 상쇄의무량 산정과 지속가능항공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산정 방법을 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출한 상쇄의무량을 해당연도의 11월 30일까지 이행의무자에 통보하도록 함

⑧ 상쇄의무의 이행·보고 (안 제9조, 별표 2)

- 3년 단위의 이행기간 동안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기한과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정함

⑨ 자료의 보관·관리 (안 제10조)

- 배출량보고서,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등 이행의무자가 보관하여야 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감축 관련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행의무자로 하여금 보관 위치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mailto:shin&kim@shin&kim.com) (전화: 044-201-4368, 팩스: 044-201-5630)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및 제6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 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②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 (안 제8조)

-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③ 어획실적 및 전재(轉載)실적의 보고 (안 제9조)

-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할 때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시간·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출항한 당일에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경우에는 양륙실적을 보고할 때 해당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을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하기 전까지 전재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④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육상으로 옮길 수 있는 장소인 양륙장소를 무역항·연안항·어항 또는 항포구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연근해어업자는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그 양륙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⑤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 (안 제14조 및 제15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및 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그 연근해어업자가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함

⑥ 어획증명서의 발급 등 (안 제16조 및 제17조)

-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

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⑦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안 제18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전재실적·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전화: 044-200-5515, 팩스: 044-2861-9431\)](tel:044-200-5515)

해양수산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1.
~05.31.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선박연료공급업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박연료 공급량이 허용오차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그 측정결과를 갖추도록 하여 선박연료 정량 공급 의무를 도입하는 한편,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별로 등록하거나 신고하기 때문에 그 영업구역이 등록하거나 신고한 항만으로 제한되나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연료공급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는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당 업종이 지역별 선박연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마련 (안 제5조제3항 및 제26조의3제8항 신설)
 -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권으로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이나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②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업종 확대 (안 제26조의3제6항)
 - 항만운송관련사업은 원칙적으로 항만별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여 영업구역이 해당 항만으로 제한되나, 영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예외 업종에 선박연료공급업으로서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하여 해당 차량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업구역 제한의 예외인 항만운송관련사업 업종을 확대함
- ③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 도입 (안 제26조의3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기로 정한 공급량보다 허용오차를 벗어나 미달되거나 증가시켜 공급해서는 아니되도록 정량 공급 의무를 규정함

-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정량 공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량 공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했는지 여부와 측정결과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함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전화: 044-200-5774, 팩스: 044-200-5789\)](tel:044-200-5774)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1.
~05.31.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 신설 (안 제2조, 제27조, 제51조, 제55조 등)
 - 먹는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 및 신고절차 등을 신설하고,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에 먹는 해양심층수유통전문판매업자 추가
- ② 부담금 연체시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 (안 제41조)
 - 고정액·월단위 부담금 연체금 산정기준을 1일 단위로 계산·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단기연체자 부담 완화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전화: 044-200-5248, 팩스: 044-200-5749\)](tel:044-200-524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20.
~07.01.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65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행)됨

이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문지원기관 자격의 범위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주요 내용으로는**① 전문지원기관 자격 범위 확대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 (안 제27조)**

- 전문지원기관의 자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활성화 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으로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담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 (안 제29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까지로 확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전화: 044-204-7887, 팩스: 044-204-7879\)](tel:044-204-7887)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21.
~07.0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24.2.6 공포)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 실증특례 부여 대상에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서 참여하는 자 추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시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시행령을 개정 및 보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①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확대에 따른 체계 및 조문 정비 (안 제2조, 제3조 등)**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비수도권 시·도지사)에서 비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비수도권 시·도지사 등)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문 정비

② 실증사업자 확대 및 부담금·세제·재정지원 요건 명시 (안 제57조의2 신설)

- 특구 외 기업(예. 수도권)이 특구 내에서 실증특례 이용을 허용, 기업이전 완료시 부담금·세제·재정지원 가능

③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재심의 신청 절차 마련 (안 제57조의3, 제64조의2 신설)**④ 규제부처 법령 정비계획 필요사항 명시로 임시허가 실효성 제고 (안 제59조제8항, 제9항)**

- 임시허가 관련 법령 정비 시 규제부처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한 법령정비계획 내용 및 정비완료 시 고지의무 신설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전화: 044-204-7204, 팩스: 044-204-7239\)](tel:044-204-720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4.05.21.
~07.0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24.2.6 공포)으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절차 등이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률의 조문·용어 등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서 규정 (안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신청을 위한 재심의 신청서 별지 서식 마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tel:044-204-7204) (전화: 044-204-7204, 팩스: 044-204-7239)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1.
~05.31.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동종 영업신고 제한 규정에 대한 제외 단 .서 추가 (안 제5조)
 - 위생용품의 안전과 관련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 영업신고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함
- ②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규정 개선 (안 제27조)
 - 「식품위생법」을 준용하고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직무범위 및 교육 등과 관련된 사항을 위생용품에 적합하게 규정
- ③ 용어중복 표현 정비 (안 제26조 및 제27조)
 - 위생용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용어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정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tel:043-719-1741) (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

금융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21.
~07.01.

고금리, 고물가 등 최근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함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출연금을 감액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 상향 (안 제42조제3항)
 - 금융회사의 법 제47조2항에 따른 출연요율을 ‘연이율 1만분의 3’에서 법 제47조1호의 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의 35’로, 법 제47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회사는 ‘연이율 10만분의 45’로 상향(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율 한시적으로 일부 감액 (안 제42조제4항, 별표1의2)
 -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와 감액 금액 등의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정함(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02-2100-2614, 팩스: 02-2100-2629\)](tel:02-2100-261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1.
~05.31.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등 (안 제9조제30항·제31항, 제229조제6호 및 제229조의2 신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을 정함

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 (안 제12조제2항제6호)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③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5항 신설)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자산운용의 제한이 필요함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④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 (안 제83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신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차입이나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⑤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 (안 제444조제9호의2 신설)

-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02-2100-2614, 팩스: 02-2100-2629\)](tel:02-2100-261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1.
~05.31.

주권상장법인 등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 등을 이유로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주요 사항에 관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제출사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안 제160조제2항 신설)**

-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의 상장 직전 반기·분기 재무정보는 공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주권 신규 상장 법인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까지 상장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상장 직전 반기·분기보고서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함

②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 (안 제161조제1항)**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는 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로 하고 있으나, 전환사채권의 발행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 정보가 주주나 투자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③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의 합리적 조정 (안 제429조제3항)**

-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하였을 때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가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으로 하고 있어 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더 낮게 산정될 수 있었음
-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④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 상향 조정 (안 제429조제4항)**

-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비하여 낮게 설정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전화: 02-2100-2688, 팩스: 02-2100-2678\)](tel:02-2100-2688)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24.
~07.03.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금액 및 범위 설정 (안 제13조의2)

- 별도관리 대상 선불충전금 금액 및 범위를 설정하고,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도 해당 범위에 포함 (안 제161조제1항)

②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 설정 (안 제13조의3)

- 은행·채신관서 예치,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등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을 규정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 기준 설정 (안 제15조)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 기준을 설정

④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결격사유 (안 제22조의3)

- 선불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승인 요건 및 승인 결격사유 구체화

⑤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 (안 제22조의7)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와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한도 및 총제공한도 설정

⑥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규정 (안 제22조의12)

-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에 관한 장부 작성의 의무화하는 등 선불업자의 행위 규칙 규정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전화: 02-2100-2621, 팩스: 02-2100-2548\)](tel:02-2100-2621)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24.
~05.30.

이사회가 내부통제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관리의무를, 대표이사는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의 마련을 비롯한 총괄 관리의무를 각각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되는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 범위 확대 (안 제8조의2 신설)

-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② 내부통제 관련 관리조치 구체화 (안 제25조의2제3항 신설)

-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의 점검' 및 '그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게 대한 조사·제재요구' 등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함

③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 (안 제25조의3제2항 및 별표 1 신설)

-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여 각 책무의 내용을 정하고, 금융회사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거나 새로운 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함

④ 내부통제 관련 총괄 관리조치 구체화 (안 제25조의4제1항 신설)

- 대표이사가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요인 취약분야로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을 정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2824, 팩스: 02-2100-2849\)](tel:02-2100-2824)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5.21.
~05.31.

핵연료주기사업 중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변환·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핵연료주기사업별로 규제체계가 구분되어 있던 것을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규제체계와 동일하게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운영허가 체계로 통일시킴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등 (안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

-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 주기시설 건설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②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허가 등 (안 제39조의4부터 제39조의7까지)

-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검사결과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에는 핵연료 주기시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③ 방사선장해 방지조치 의무 대상자의 합리적 조정 (안 제91조제1항 및 제2항)

- 일정 용도나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선동위원소 또는 일정 용도나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방사성물질의 방출량 및 피폭방사선량을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만 하도록 하고, 그 외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및 피폭관리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 문의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http://www.nra.go.kr) (전화: 02-397-7264, 팩스: 02-6273-7809)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2024-05-21 발의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의 노동 강도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규모의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주가 많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2021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의원 등 10인)

2024-05-23 발의

현행법상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인 처장과 법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2024년 상반기 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배치된 법관 수가 급증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의 재판업무 증가로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 이에 재판업무를 담당할 주체인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법관증원론 등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법관 인력을 사법행정 등 비재판업무로 배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법관을 법원행정처에 배치한 결과 조언이나 의견 제시, 충고 등의 형태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재판 독립을 위해 도입된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가 오히려 사법행정을 통해 위헌·위법행위를 한 법관에 대한 책임면탈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 등)

이에 법원행정처를 대법관인 처장 이외에는 사법행정을 주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재판지연 해소와 재판독립 강화를 꾀하고자 함 (안 제68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양경규의원 등 10인)**

2024-05-21 발의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그간 돌봄서비스의 양적 제공을 중심으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또한, 돌봄 관련 법령은 서비스의 동일·유사 여부를 불문하고 담당 부처와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돌봄근로자 사이에서도 근로환경과 조건이 상이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돌봄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에 관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돌봄근로자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자 함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5/27현재 본회의 및 상임위 일정 미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5/27(월) 10:00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발족 및 22대국회 조세·재정 분야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진선미·김상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7(월) 13:00	과학기술 미래 R&D 혁신전략 국회 공동 포럼	김종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5/27(월) 14:00	건설부동산 위기 진단과 해법	서병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1간담회실
	5/27(월) 14:00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오기형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5/28(화) 10:00	[한국사회복지연대 국회토론회]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서영석 의원실, 한국사회복지연대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8(화) 10:00	누구나집·뉴스테이의 공공성과 분양 방안	허종식 의원실, 경인일보 등	의원회관 6간담회실
	5/28(화) 10:00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박수영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5/29(수) 14:00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정상화와 22대 국회의 역할	이재정 의원실 등	노무현 시민센터
	5/30(목) 14:0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	이소영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5/31(금) 10:00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윤후덕·성일종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5/31(금) 14:00	양극화의 심화인가,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	성일종·주철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5/28(화) 10:00	「제76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국회사무처	
	5/27(월)	「최신외국입법정보」 개원대비 특집호(2024-8호) 발간 - 주요국 법률정보 가이드북	국회도서관	
	5/27(월)	「Data&Law」 개원대비 특집호(2024-4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저출생 사회		
	5/27(월)	「THE 현안」 제12호(2024-12호) 발간 - 유럽의 사회주택		

자료집 등	5/29(수)	「금주의 서평」 제680호(2024-21호) 발간 - 도서명 : DMZ의 역사 저자 : 한모니까		
	5/29(수)	「World & Law」 2024-10호 발간 - 위기의 교권, 실질적인 보호 대책은?		
	5/30(목)	「현안, 외국에선?」 제82호(2024-10호) 발간 - 영국의 부담가능 주택정책		
	5/30(목)	제22대 국회 개원 대비 「정책자료집 I」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5/30(목)	NABO 2023 연차보고서 발간		
	5/27(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97호 발간 - 생성 AI가 만든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의 진화와 의미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3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5/22(수) 10:00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강은미·용혜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5/22(수) 14:00	지속가능미래를 위한 ESG경영전략 세미나 - 기업과 NGO 협력을 중심으로	홍석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5/23(목) 10:00	美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진선미·홍성국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자료집 등	5/20(월)	「THE 현안」 제11호(2024-11호) 발간 - 2023 한국의 사회지표	국회도서관	
	5/2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5호(2024-7호) 발간 - 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		
	5/22(수)	「금주의 서평」 제678호(2024-19호) 발간 - 도서명 : 팬덤의 시대 저자 : 마이클 본드		
	5/20(월)	「이슈와논점」 제2237호 발간 - 미일동맹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국회입법조사처	
	5/21(화)	「이슈와논점」 제2238호 발간 - AI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공급 · 전력망 확충 긴급		
	5/21(화)	「이슈와논점」 제2239호 발간 -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		
	5/22(수)	「이슈와논점」 제2240호 발간 -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		
	5/23(목)	「이슈와논점」 제2241호 발간 - 철도지하화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		
	5/23(목)	「국가미래전략 Insight」 96호 발간 - 글로벌 경제에서 자산불평등과 주택정책 방향성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5.20~05.26)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5/21(화)	자본시장/증권/ 불공정 거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에서 ‘부당이득액’에 대한 인과관계를 다투어 부당이득액 관련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거래의 몰수 및 추징을 막을 수 있었던 사안
5/22(수)	ESG	EU 에코디자인 규정 유럽의회 통과 - 에코디자인 요구조건 강화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